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484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1. [redacted]시장
	2. [redacted]시장
	3.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6. 16.
판 결 선 고	2015. 7.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3. 26. 원고 A에게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673,440원, 원고 B에게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426,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2

3. 27. 원고 A에게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755,870원, 원고 B에게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499,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서귀포시장이 2014. 3. 31. 원고 A에게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57,450원, 원고 B에게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03,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남매지간으로서 2012. 1. 1. 당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중 각 30%인 6,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의 부모인 D, E는 소외 회사의 주식 중 각 5%인 1,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원고들과 D, E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 A가 2012. 9. 10.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15%인 3,000주를 추가로 취득하고, 원고 B이 2012. 10. 22.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10%인 2,000주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원고 등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비율이 70%에서 95%로 상승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각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 등이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지분을 해당 비율만큼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14. 3. 26. 피고들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 [redacted]시장은 2014. 3. 26. 원고 A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2

673,440원을, 원고 B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26,3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피고 [redacted]시장은 2014. 3. 27. 원고 A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755,870원, 원고 B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99,1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으며, 피고 서귀포시장은 2014. 3. 31. 원고 A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57,450원, 원고 B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03,95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서귀포시장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4. 3. 26. 피고들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주무관청인 피고들이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위 신고서 제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2

따라서 피고들이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서귀포시장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 중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자산의 소유권까지 함께 취득하였다고 의제하여 일률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고, ② 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과점주주가 된 후 해당 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양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은,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을 벗어나 법률의 위임도 받지 아니한 채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그 보유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까지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2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위헌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주주 1명과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는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비상장법인의 모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필요한 정도 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이상의 과잉된 수단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2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도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법인의 자산 취득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어 경제적, 사실적으로 법인과 과점주주는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그 후 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법인에 의한 1회의 취득세 납부로 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만일 법인의 자산 취득 전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까지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사실상 지배력의 관점에서 해당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 해당 법인이 자산 취득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납부케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중복 부담을 과하게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법인의 자산 취득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만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법인의 자산 취득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10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의 위헌 여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2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은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제10조 제4항의 각 규정은 그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폭을 보다 강화시켜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나 추가로 취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요건이 되는 것임을 규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이 과점주주의 주식 증가분을 추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된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러한 과세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취지를 명백히 한 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5누2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2

주주인 원고들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 김선아

판사 이광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2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2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